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0.

발 의 자 : 강경숙 · 김재원 · 박은정
이해민 · 김선민 · 백선희
신장식 · 서왕진 · 차규근
김준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헌법」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·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, 이를 반영하듯 최근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으며,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가치의 수호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개관 이래 국내 최대의 공법 전문 도서관으로서 국민과 학계 및 법률전문가에게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함으로

써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,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5 신설).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소재지) 헌법재판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.

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5(헌법재판소도서관)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도서관에 관장을 둔다.

③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이거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④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⑤ 그 밖에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소재지) 헌법재판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.</u> <u>제19조의5(헌법재판소도서관)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을 둔다.</u> <u>② 도서관에 관장을 둔다.</u> <u>③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 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한다.</u> <u>④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u> <u>⑤ 그 밖에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.</u>